의 안 번 호	2186	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**검 토 보 고 서**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11. 9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11. 9.(목)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12. 19.(화)

2. 제안이유

○ 시행 초기 저조한 기부실적으로 기금 조성 목표액을 하향 조정하고 당초 기금 예산항목에 없는 공공예금이자수입(216-01)을 신설하는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해 적정여부를 심의 요구함.

3. 주요내용

1 2023년도 기금조성 목표액 변경: 78,000천원 → 32,000천원

○ 수입계획

(단위: 천원)

항 목	수입액 (목표액)	기정액	증 감	수입액 산출내역
계	32,000	78,000	▲46,000	
(216-01) 공공예금 이자수입	100	0	100	•기부금수입 x 0.7%
(224-03) 기부금수입	18,873	45,500	▲26,627	•3,145,500원 x 6개월
(721-03) 기타회계 전입금	13,027	32,500	▲19,473	•2,171,200원 x 6개월 •일반회계→기금(6.21.전출)

※ 참고

❍ 고향사랑기부금 수입현황 (9월 말 기준)

인당 평균기부금액	가장 많은 기부 금액대	기부자수	**총기부액**
86,367원	100,000원	276명	**23,837,400원**

❍ **월별 기부비율(%)**

월 별	월별 기부건수/총 기부건수 비율	비 고
1월	13.0%	
2월	6.7%	
3월	15.6%	
4월	5.6%	
5월	9.3%	
6월	5.9%	
7월	6.7%	
8월	3.2%	
9월	34.0%	

2 **예산항목 신설: 공공예금이자수입(216-01)**

변경 항목	당초 항목	비 고
(216-01) 공공예금 이자수입		•예산항목 신설
(224-03) 기부금수입	(224-03) 기부금수입	
(721-03) 기타회계 전입금	(721-03) 기타회계 전입금	

4. 근거법규

❍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

❍ 「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12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

5. 검토의견

❍ 본 계획안은 시행 초기 저조한 기부실적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을 하향 조정하고, 당초 기금 예산 항목에 없는 공공예금 이자수입(216-01)을 신설하는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해 적정여부를 심의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